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833739	
등록번호	110111-8337390	
상 호	주식회사 에이치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

공고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공고하며,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한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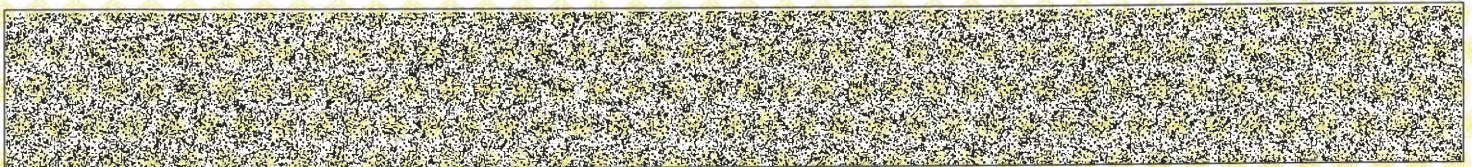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 주	금 300,000,000 원	. .
보통주식	60,000 주		. .
발행주식의 총수	4,060,000 주	금 20,300,000,000 원	2022.08.31 변경
보통주식	660,000 주		2022.08.31 등기
제1종종류주식	3,400,000 주		

목 적	
(1)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부동산	
2.부동산개발사업	
3.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신택이 종료된 때에 신택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증권, 채권	
6.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2)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투자·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60116154301060129100222009231703K3T8M1K1D1KOL1S1 2      발급확인번호 7397-ALYT-MIBX      발행일:2022/09/16



등기번호	833739
------	--------

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4.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박영희 750103-***** 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대표이사 박영희 750103-*****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329동 1901호(원문동, 래미안슈르) 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카타비상무이사 김연희 801218-***** 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카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 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감사 박성언 790223-*****	
사내이사 곽동욱 780822-***** 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배성용 900618-***** 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용오 690927-***** 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대표이사 곽동욱 7808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105동 1202호(서호동, 제주 서귀포혁신도시엘에이치1단지) 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종류주식

①회사는 이천오백만(25,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한다.

③제1종 종류주식의 우선배당률은 그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5.3%(이하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 이라고 한다)로 한다. 명확히 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제1종 종류주식 배당률은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365(윤년인 경우 366) X 5.3%}로 산출한다.

④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하 “보유자산” 이라 한다)의 매각일(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는 매 결산기의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1.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에 따른 금액(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의 누적 금액을 포함한다)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3. 매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이 상기 제1호의 제1종 종류주식의 목표 배당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제55조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제1종 종류주식의 목표 배당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배당할 수 있다.

⑤회사는 보유자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등기번호	833739
------	--------

1.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에 따른 금액(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의 누적 금액을 포함한다)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최종 운영기간 배당)

2.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하 “순매각차익 배당가능이익”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순매각차익 배당가능이익의 50%는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5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⑥ 청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은 현금화하여 회사의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며,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로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1.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2.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3. 위 각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어느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2년 08월 31일 설정      2022년 08월 31일 등기

**기 타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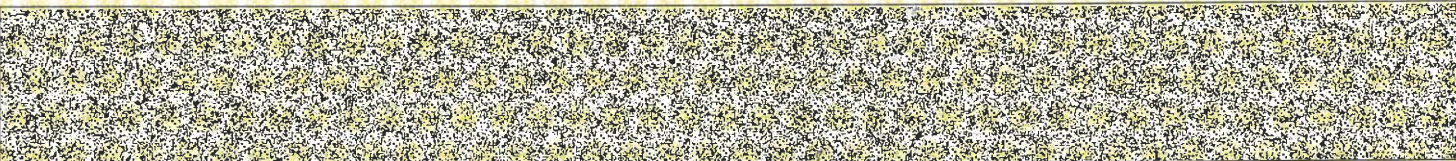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22년 06월 17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2년 06월 17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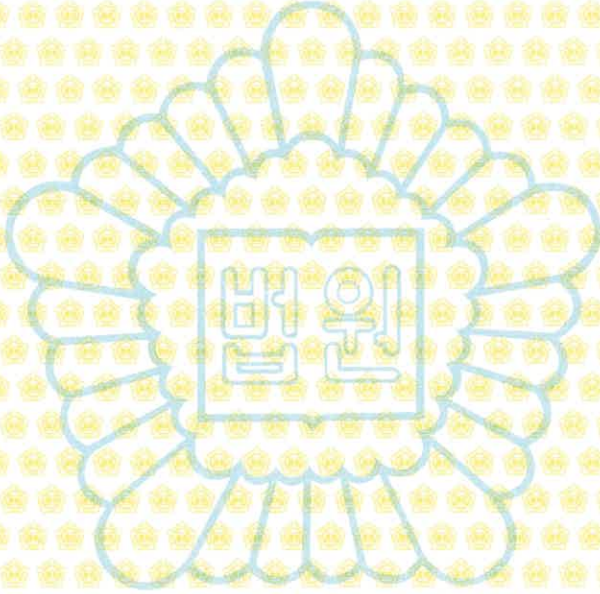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등기번호	833739
------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2년 09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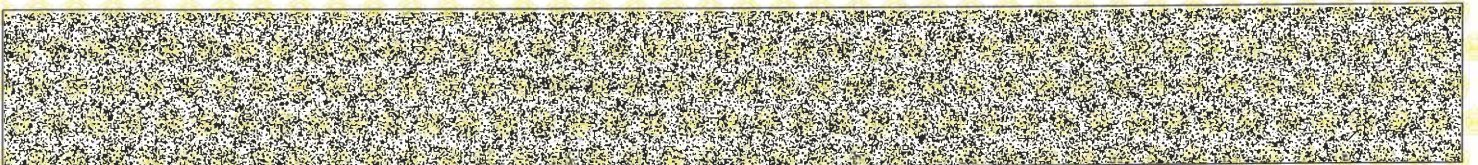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60116154301060129100222009231703K3T8M1K1D1KOL1S1 2

발급확인번호 7397-ALYT-MIBX

발행일:2022/09/16